

「성평등·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」

〈제주여성가족연구원-제주문화예술재단-제주메세나협회〉

제주여성가족연구원, 제주문화예술재단, 제주메세나협회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색 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·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세 기관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문화창조 역량과 기회를 심화, 확대시킴으로써 제주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운영 원칙) 모든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상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인지 관점의 학술 조사 및 정책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
- ②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문화 향수 격차 해소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
- ③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성인지·인권·양성평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도내 양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·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
- ④ 기타 본 협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

제4조(비밀유지) 상호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의 조정) 상호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효력 및 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③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,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7조(해지)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 등)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, 이후의 협력 사항 및 활동내역 등을 매스컴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보도자료 등으로 알리는 경우,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

상호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,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6월 27일



제주여성가족연구원
JEJU WOMEN & FAMILY RESEARCH INSTITUTE



JFAC 제주문화예술재단
Jeju Foundation for Arts & Culture



제주메세나협회
Jeju Mecenat Association

원장 문순덕

문순덕

이사장 김수열

김수열

회장 양문석

양문석